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전용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20

발의연월일: 2020. 6. 12.

발 의 자:전용기·전재수·이동주

임종성 · 김정호 · 송갑석

이원택 · 고영인 · 박용진

강선우 · 정청래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.

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 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, 대학원생도 대출 대상에 포함하여 학자금에 대한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계속 존재해왔음.

저소득층 등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원 진학이 어려운 계층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줌으로써 사회이동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의 도입 목적에 부합하는 것임. 이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으로써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3조제4호).

법률 제 호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조제4호 중 "외국인 및 대학원생"을 "외국인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3조(정의)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"대학생"이란 고등교육기관	4
에 재학(입학 또는 복학 예정	
인 경우를 포함한다)하고 있	
는 학생(외국인 및 대학원생	
은 제외한다)을 말한다.	<u>୍</u> ପି
5. ~ 13. (생 략)	5. ~ 13. (현행과 같음)